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81
----------	----

제출년월일 : 2022. 12. 2.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일반회계 예탁금이자 수입 증가분 반영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재정 불균형 조정, 지방채 상환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조성액 반영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2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 지자체 지원사업을 위해 배분된 예산을 정치현수막 우선계시대 확충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라.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 금 명	계획액	기정계획액	비교증감
합 계	20,509,910	9,462,728	11,047,18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02,041	979,541	22,5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000,000	0	11,000,000
체육진흥기금	2,211,088	2,211,088	-
자활기금	250,562	250,562	-
재난관리기금	1,681,360	1,681,360	-
옥외광고발전기금	164,225	139,543	24,682
식품진흥기금	169,837	169,837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030,797	4,030,797	-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